

##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 정관

---

### 제1장 총 칙

#### 제1조(명칭)

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학박사원(이하 '박사원')이라 한다.

#### 제2조(목적)

본 박사원은 목회자의 목회 지도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설치 장소)

본 박사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내에 설치한다.

#### 제4조(운영)

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본 박사원을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한다.

#### 제5조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의 변경은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2장 자산과 회계 및 감사

#### 제6조(재정)

박사원의 재정은 위원회 지원금, 등록금, 기부금, 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

#### 제7조(재정)

자산의 관리는 위원회가 의결하여 처리하고 법규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8조(회계의 구분 및 집행)

회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, 회계는 박사원장이 집행하고, 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일반회계: 교육사업
2. 특별회계: 특별 기획사업

#### 제9조(회계연도)

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10조(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)

위원회는 총회에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11조(감사)

박사원 운영의 감사는 위원회 감사와 총회 감사로 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#### 제12조(위원회 구성)

위원회는 총회장, 부총회장(목사), 박사원 동문대표 2인,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 2인, 박사원장, 박사원 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13조(임기)

파송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(임원)

운영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한다.

#### 제15조(위원회의 임무)

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고, 필요한 경우 총회에

보고한다.

1. 박사원의 예산과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
4. 박사원 관련 제반 규칙에 관한 사항

**제 16조(위원회 감사)**

위원회는 총회 감사 1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박사원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, 감사는 위원 2인으로 한다.

**제 17조(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)**

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 18조(위원회의 소집)**

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,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조직과 교직원

**제 19조(조직)**

박사원은 원장과 처장으로 조직하고,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처를 둘 수 있다.

**제 20조(박사원의 장)**

박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1.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목사
2. Ph.D., Th.D.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(academic degree)를 소지한 자
3. 박사원 교수 경력을 소지한 자

#### 제21조(부처 조직과 장)

1. 교무처: 학사와 교무 업무를 관장한다.
2. 총무처: 일반 행정과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.
3. 처장은 박사원 교수로 하여금 겸임하게 한다.
4. 처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## 제22조(교직원)

교직원의 구성과 임면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 제5장 해 산

#### 제23조(해산)

박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24조(잔여재산의 귀속)

박사원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총회에 귀속된다

## 부 칙

1. (시행) 이 정관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5회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.
2. (학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.
3. (시행세칙) 이 정관과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통상규칙을 준용하여 결의하며, 교과과정을 기본으로 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